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8 선고 2021나569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맥

담당변호사 문방진, 이학선

피고, 항소인 1. B 주식회사

2. 주식회사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균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신욱

변 론 종 결 2022. 3. 18.

판 결 선 고 2022. 4. 8.

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4. 2. 선고 2020가단50669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 B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9의 각

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6. 체결한 대물변제계약과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0, 2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6. 7. 체결한 대물변제계약 및 피고 주식회사 C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6.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은 각 98,822,46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“지급명령정본 송달일” 다음에 “(E 2019. 9. 16. 송달, 소외 회사 2019. 9. 20. 송달)”을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“2019. 7. 2.”을 “2019. 7. 1.”로, “같은 달 3.”을 “같은 달 2.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“(이하 ’이 사건 각 상가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위 목록 순번 10 내지 17의 각 부동산을 ’이 사건 각 상가’라 한다)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“2019. 6. 27.”을 “2019. 6. 17.”로, 제5행의 “2019. 6. 10.”을 “2019. 6. 7.”로 각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말미의 “마쳐주었다.”를 “마쳐주었는데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. 7. 12.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,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는 2019. 7. 12. I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“2019. 6. 7.”을 “2019. 6. 10.”로 고친다.

-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“(이하 ‘이 사건 각 빌라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8, 19의 각 부동산과 함께 ‘이 사건 각 빌라’라 한다)”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6행의 “인정할 수 있다.”를 ”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“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흠, 판사 김효진, 판사 김영아

<별지1>

목 록

1. 전남 화순군 도로 111㎡
2. 대 1230㎡
3. 대 223㎡
4. 대 196㎡
5. 대 16㎡
6. 대 30㎡
7. 도로 796㎡
8. 대 294㎡
9. 대 305㎡
10. , , , , , 지상
 빌딩 동
일반철골구조 (철근) 콘크리트지붕 4층
제1, 2층근원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 중
제1층 호, 면적 : 122.7㎡
11. 같은 건물 중
제1층 호, 면적 : 52.87㎡
12. 같은 건물 중
제1층 호, 면적 : 168.3㎡
13. 같은 건물 중
제2층 호, 면적 : 294㎡
14. 같은 건물 중
제3층 호, 면적 : 291㎡

15. 같은 건물 중

제3층 호, 면적 : 31.04㎡

16. 같은 건물 중

제3층 호, 면적 : 31.53㎡

17. 전남 화순군 , , , , 지상

필당 등

경량철골구조, 판넬워싱글지붕 단층

제2종근린생활시설

제1층 호, 면적 : 29.82㎡

18. 전남 화순군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

단독주택

1층 57.33㎡

2층 57.33㎡

19. 전남 화순군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단층

단독주택

120.09㎡

20. 전남 화순군 대 54㎡

21. 대 12㎡ 끝.

<별지2>

목 록

1. 전남 화순군 [] 대 266㎡
2. [] 대 266㎡
3. [] 대 302㎡
4. [] 대 265㎡
5. [] 대 267㎡
6. [] 대 324㎡
7. [] 대 328㎡
8. [] 대 338㎡
9. 전남 화순군 []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단층
단독주택
66.51㎡
10. 전남 화순군 []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단층
단독주택
66.51㎡
11. 전남 화순군 []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단층
단독주택
66.51㎡
12. 전남 화순군 []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
단독주택

1층 57.33㎡

2층 57.33㎡

13. 전남 화순군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

단독주택

1층 57.33㎡

2층 57.33㎡

14. 전남 화순군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

단독주택

1층 57.33㎡

2층 57.33㎡

15. 전남 화순군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3층

단독주택

1층 86.38㎡

2층 86.38㎡

3층 56.32㎡

16. 전남 화순군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3층

단독주택

1층 86.38㎡

2층 86.38㎡

3층 56.32㎡ 끝.

